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135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영형, 이성철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단독으로 또는 C와 함께 원고에게 'D'라는 업체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9,240만 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C의 사기 범행 내지 불특정 다수인 상대 유사수신행위에 제공될 금융계좌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9,240만 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기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가 단독으로 또는 C와 함께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투자를 권유하며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융계좌 대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C은 D의 김해지점장으로서 인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C에게 투자금 수취를 위한 은행계좌를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11. 30.부터 2016. 1. 2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2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가 고의로 C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가 C에게 계좌를 대여한 것이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이 범행을 은폐하거나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계좌대여가 유사수신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C이 신용불량자인 탓에 계좌를 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 · 피고 모두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점 등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효제